

大韓建築士協會定款

1965년 10월 23일 창립총회 제정

第1章 總 則

第 1 條 本會는 建築士法에 依하여 設立한 法人으로서 大韓建築士協會(以下本會라 한다)라 부른다

第 2 條 本協會는 事務所開設登錄을 마친者로서 組織한다

第 3 條 本協會는 建築士의 品位保全, 相互親睦 및 權益擁護와 建築士業務의 健全한 發展을 通하여 建築物의 質의 向上을 꾀하고 아울러 國家의 建設施策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4 條 本協會의 主事務所 및 各支部의 事務所는 다음에 둔다.

主事務所 서울特別市中區會賢洞三街貳番地

支部事務所 서울特別市西大門區西小門洞壹六番地

濟州市二徒一洞壹參五壹番地の六

春川市中央路二街參六番地

大邱市中區東門洞拾參番地

光州市不老洞四參番地

大田市大興洞五五番地

仁川市新生洞貳六番地

清州市南門路二街參七番地の貳

全州市慶園洞一街壹貳八番地の壹

馬山市中央洞一街五番地

釜山市中區東光洞二街壹貳番地

第 5 條 本協會는 그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 各項에 關한 事業을 한다.

1. 建築 및 建築士業務에 關한 研究, 調查, 統計, 鑑定, 證明 및 宣傳.
2. 建築士業務報酬基準에 對한 策定
3. 會員의 業務에 關하여 發生하는 紛爭에 對한 調停
4. 建築에 關한 敎養, 作品發表 및 資材展示
5. 建築에 關한 國際機構에의 參與와 國際交流
6. 會員의 厚生 및 共濟
7. 本協會의 機關紙刊行 및 出版
8. 地方的으로 必要不可缺한 支部事業에 對한 補助
9. 其他 第3條의 目的達成에 必要한 事業

第 6 條 本協會는 이 定款으로 定하는 外에 組織과

業務運營上 必要한 事項을 規程으로 이를 定할 수 있다

第2章 會 員

第 7 條 本協會에는 다음의 會員을 둔다

1. 正會員
2. 推戴會員
3. 名譽會員
4. 贊助會員

第 8 條 ①正會員은 建築士事務所開設者로 한다 새로히 正會員이 된 사람은 本協會所定의 入會金을 納付하여야 한다

②推戴會員은 本協會에 功勞가 많은 正會員으로서 總會에서 推戴받은 사람으로 한다

③名譽會員은 著名한 外國建築士로서 理事會에서 推戴받은 사람으로 한다

④贊助會員은 本協會의 事業目的을 贊同하는 個人 또는 法人으로 한다

第 9 條 ①本協會의 正會員은 다음의 權利를 갖는다

1. 發議 및 議決權
2. 選舉 및 被選舉權

②會員은 書面이나 代理人으로써 議決權을 行使할 수 없다

第 10 條 ①本協會의 正會員은 다음의 義務를 진다

1. 定款 및 諸規程의 遵守
2. 倫理規約의 遵守
3. 各種會費의 納付

②推戴會員이 된 正會員에게는 正會員費를 免除한다

第 11 條 ①正會員이 本協會의 定款 및 倫理規約을 違反하였을 때는 本會의 倫理委員會는 理事會의 議決을 얻어 其情狀에 따라 다음의 微戒를 한다

1. 勸告
2. 遣責
3. 資格停止
4. 除名

②倫理規約 및 倫理委員會의 規程은 別途로 定한다

第 12 條 正會員이 建築士法令 本協會의 定款 및 諸規

程의 定하는 바에 따라 營業停止 또는 資格停止에 處分을 받았을 때는 其停止期間中 本協會의 會員으로서의 權利가 停止된다

②前項에 該當하는 會員이 本協會의 任員 또는 代議員일 때는 其處分을 받은 날부터 其職責이 解任된다

第13條 正會員이 建築免許取消處分을 받거나 또는 免許가 消滅되었을 때에는 本協會에서 除名된다

第3章 任 員

第14條 本協會에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會 長 1名
2. 總務理事 1名(理事中에서 互選한다)
3. 理 事 4名
4. 監 事 2名

第15條 ①會長은 本協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統理하고 總會 및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②總務理事는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有故時는 職務를 代行한다

③理事會는 理事로써 組織하며 本協會의 運營에 關한 諸般事項을 議決한다

④監事는 本協會의 業務 및 會計事務를 監査하여 이를 總會에 報告한다

第16條 會長, 理事 및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第17條 ①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重任할 수 있다

②任員中 理事 3名 및 監事 1名의 任期는 初회에 限하여 1年으로 한다

③任員中 缺員이 생긴 경우는 30日以內에 補選하고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18條 任員中 會長 및 理事의 就任은 主務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19條 ①本協會에 顧問若干名을 두되 國內의 著名한 人士中에서 理事會가 이를 推戴한다

②顧問은 會長의 諮問에 應한다

第4章 會 議

第20條 本協會에는 다음의 會議을 둔다

- ①總 會
- ②理事會
- ③委員會

第21條 ①總會를 區分하여 定期 및 臨時的 2種으로 한다

②總會는 代議員으로써 이를 構成한다

③代議員은 各支部 正會員中에서 選出하되 正會員 每5名當 1名式의 比率로 이를 選出하며 그端數와

正會員數가 5名 未滿일 때는 이를 5名으로 看做하여 選出한다

④定期總會는 每年 9月中에 召集한다

⑤臨時總會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召集한다

1. 理事會에서 必要하다고 認定할때
2. 代議員總數의 3分の1 以上이 會議目的을 提示하고 召集의 要求가 있을때
3. 正會員總數 3分の1以上의 召集要求가 있을때
4. 監事의 召集要求가 있을때

第22條 ①總會는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②總會의 召集은 最少限 10日前에 總會의 目的事項日時, 場所等을 表示한 文書로서 會員에게 通知함과 同時에 建設産業新聞에 廣告하여야 한다

第23條 總會에서는 다음의 事項을 議決한다

1. 定款改正
2. 任員改選
3. 事業報告書, 財産目錄, 損益計算書 및 貸借對行表의 承認
4. 事業計劃 및 收支豫算의 承認
5. 基本財産의 設置 및 處分
6. 諸規程의 制定 및 改廢
7. 其他 理事會가 必要하다고 認定한 事項

第24條 ①總會는 代議員過半數의 出席으로 成立하며 出席代議員過半數贊成으로 議決한다

②贊反同數인 경우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

③總會에서 出席代議員過半數의 動議가 있을 때에는 第23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이를 議決할 수 있다

第25條 ①理事會는 會長 및 理事로써 組織하고 必要에 따라 每月 1個以上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②理事會는 總會의 委任事項 및 會務執行에 關한諸般事項을 議決한다

③理事會는 會長 및 理事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出席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贊反同數일때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

④監事 및 支部長은 理事會에 參席하여 意見を 陳述할 수 있다

第26條 ①本協會에는 다음의 委員會를 둔다

1. 企劃委員會
2. 倫理委員會
3. 編纂委員會
4. 指導委員會
5. 研究委員會

6. 其他 理事會에서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委員會

第27條 委員會에는 委員長 1名 委員 若干名을 두되 理事會가 이를 選任한다

②委員의 任期는 1年으로 하되 重任할 수 있다

- ③委員會의 成員 및 議決方法은 別途 規程이 없는 限 理事會에 關한 節次에 따른다
- ④各種委員會의 規程은 別途로 定한다

第 5 章 事務機構

第28條 ①本協會에 事務處를 두고 處長 名과 若干名의 職員을 둔다

- ②處長은 理事會의 議決로서 會長이 이를 任命한다
- ③處長은 會長의 命을 받아 會務를 處理하며 所屬 職員을 指揮監督한다

第29條 ①事務處에는 다음의 部署를 둔다

1. 總務部
2. 指揮部
3. 出版部
4. 事業部

②部에는 部長 및 職員을 두되 理事會의 議決을 얻어 會長이 이를 任命한다

第30條 ①會長, 理事, 監事 및 委員은 名譽職으로 하고 事務處長 및 其他職員은 有給으로 하되 報酬額은 理事會에서 議決한다

②任員 및 委員이 會務를 執行하기 爲하여 費用이 所要될 때에는 其實費를 支給하고 辦公費를 支給할 수 있다

第 6 章 財産 및 會計

第31條 本協會의 財政은 正會員會費, 特別會費, 贊助會費 및 事業收入金 등으로 充當한다

1. 正會員會費…正會員이 年額으로 納付하는 會費
2. 特別會費…正會員이 그 業務實績에 따라 別途規程에 依하여 納付하는 隨時會費
3. 贊助會費…贊助會員이 納付하는 會費
4. 事業收入金…本會의 事業으로 收入되는 利得金

第32條 ①本協會의 會計年度는 1年으로 하고 每年 9 月 1日에 始作하여 다음해 8 月 31日에 曆勘한다

②本協會에는 特別會計를 둘 수 있다

第33條 會長은 每年 9 月 10日까지 前年度 財産目録, 損益計算書, 收支決算書 및 貸借對照表를 作成하여 監事의 監査를 받아 總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 7 章 支 部

第34條 支部는 다음 各項에 關한 事業을 한다

1. 建築 및 建築土業務에 關한 研究 調査 統計, 鑑定, 證明 및 宣傳
2. 建築에 關한 會員의 敎養 및 作品發表
3. 協會本部에서 委任받은 事項
4. 其他 幹事會에서 必要하다고 認定된 事業

第35條 支部에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支部長 1名
2. 幹事 서울特別市 9名以內 釜山市 5名以內 其他3名以內
3. 監事 2名
4. 代議員 代議員數는 第21條(3)項에 規定한바에 따른다
5. 分所長 分所當 1名

第36條 ①支部長은 支部를 代表하며 支部會務를 統理하고 支部總會 및 幹事會의 議長이 된다 支部長有故時는 支部長이 指名한 幹事가 이를 代行한다

②幹事會는 幹事로써 組織하며 支部의 運營에 關한 諸般事項을 議決한다

③監事는 支所의 業務와 會計事務를 監査하여 이를 支部總會에 報告한다

監事 및 分所長은 幹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第37條 支部長, 幹事, 監事, 代議員 및 分所長은 支部總會에서 選出한다

第38條 ①支部長 幹事 및 分所長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重任할 수 있다

②監事 및 代議員의 任期는 1年으로한다

③任員의 補選과 그 任期는 第17條3項에 規定한바에 따른다

第39條 代議員을 除外한 支部任員의 就任時는 協會本部에 報告한다

第40條 支部에 는다음의 會議를 둔다

1. 總會
2. 幹事會
3. 委員會

第41條 ①總會는 定期 및 臨時的의 2種으로한다

②總會는 支部所屬正會員으로 이를 構成한다

③定期總會는 每年 8月中에 이를 召集하고 臨時總會는 다음의 경우에 召集한다

1. 幹事會에서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2. 支部所屬正會員總數 3分の1 以上の 召集請求가 있을 때
3. 監事의 召集要求가 있을 때

第42條 總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1. 任員改選
2. 事業報告書, 財産目録, 損益計算書 및 貸借對照表의 承認
3. 事業計劃 및 收支豫算의 承認
4. 基本財産의 設置 및 處分
5. 諸規程의 制定 및 改廢
6. 其他 幹事會가 必要하다고 認定한 事項

第43條 協會의 召集者 成員 및 議決에 關한 事項等은 協會總會에 關한 規程에 따른다

第44條 幹事會는 支部長 및 幹事로 組織하며 召集 成員 및 議決에 關한 事項等은 理事會에 關한 規程에 따른다

第45條 支部에는 다음의 委員會를 둔다

1. 指導委員會
2. 其他 幹事會에서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委員會

第46條 委員會 規程은 協會의 委員會에 關한 規程에 따른다

第47條 ①支部에 事務所를 두고 事務長 1名과 若干 名의 職員을 둘 수 있다

②事務長은 幹事會의 議決로서 支部長이 이를 任命 한다

③事務長은 支部長의 命을 받아 支部의 會務를 處理하여 所屬職員을 指揮監督한다

第48條 ①事務所에는 다음의 部署를 둘 수 있다

1. 總務
2. 指導
3. 事業

②各部署의 職員은 幹事會의 議決을 받아 支部長이 이를 任命한다

第49條 ①支部長, 幹事, 監事, 代議員, 分所長 및 委員은 名譽職으로 하고 事務長 및 職員은 有給으로 하되 報酬額은 幹事會의 議決을 얻어 支部長이 이를 定한다

②任員 및 委員이 會務를 執行하기 爲하여 費用이 들 때에는 그 實費를 支給한다

第50條 支部가 總會를 가졌을 때는 10日以內에 다음 書類를 갖추어 協會의 承認을 받는다

1. 創立總會의 境遇

一. 會員名單(姓名, 住所, 級別, 事務所, 所在地 等 包含

二, 任員의 名單 및 履歷書

三, 事業計劃書 및 收支豫算書

四, 總會 會議錄

2. 定期總會의 境遇

一, 會員名單

二, 改選된 任員名單 및 履歷書

三, 事業報告書 및 收支決算書

四, 總會 會議錄

3. 臨時總會의 境遇

一. 議決된 事項

二. 總會 會議錄

第51條 支部가 總會에서 承認된 事業計劃以外에 事業을 遂行코저 할 때는 그 事業의 實施 10日前에 다

음의 書類를 갖추어 協會의 承認을 받는다

1. 事業種目

2. 事業計劃書 및 收支豫算書

第52條 ①支部는 每月 10日까지 會務에 關하여 다음과 같이 協會에 報告한다

1. 前月の 一般會務報告書

2. 前月の 事業報告書 및 會計報告書

3. 그달의 事業計劃 및 收支豫算書

②月例報告外에 特殊事項 또는 突發事項이 있을 때에는 即時 協會에 報告한다

第53條 支部는 一般會務 및 會計에 關하여 協會의 監査를 年1回以上 받는다

第54條 ①支部의 財政은 支部에서 收入되는 正會員 會費, 特別會費 贊助會費 및 事業收入金中 支部에 配定된 金額 및 協會의 補助金等으로 充當한다

②支部에 配定되는 金額 및 補助金은 協會의 定期 總會에서 定한다

第55條 支部의 會計年度는 1年으로 하고 每年 8月 1日에 시작하여 다음해 7月 31日로 마감한다

第56條 支部長은 每年 8月 10日까지 前年度 財産目錄, 損益計算書, 收支決算書 및 貸借對照表를 作成하여 監事의 監査를 받아 總會에 提出한다

附 則

創立總會에서 選出된 任員은 第21條의 規定에 不拘 하고 이 定款의 規定에 의하여 選出된 것으로 본다

大韓建築士協會倫理規約

1965年10月23日 創立總會制定

第1條 建築士는 委囑者의 信任을 받는 代理人이며 自己에게 맡겨진 責任과 任務를 良心과 誠意로서 遂行한다

第2條 建築士는 委囑者에 關하여 業務上의 秘密을 遵守한다

第3條 建築士는 委囑의 對象이 되는 建築物이 純粹한 建築文化와 社會福祉에 合致되지 않는다고 認定되거나 委囑者의 要素로 보아 建築士들 自體의 權益을 損傷시킬 우려가 있다고 認定될 때는 業務의 委囑을 拒否한다

第4條 建築士는 委囑에 關한 報酬以外에는 어떠한 金品도 받지 않는다

第5條 建築士는 委囑者에게 事前에 報酬額制定의 原則과 記計委囑에 따르는 諸條件 또는 規約等을 啓

蒙熟知시켜야 할 것이며報酬의 報酬引 其他 不當한 手段으로 建築士와 競爭하지 아니한다

第6條 建築士는 專門家로서 委囑者와 都給業者및 納入業者間의 모든 問題를 公平하게 實際의으로 判定한다

第7條 建築士는 다른 建築士와 委囑者間에 交涉이 相當히 進行된 것을 알면서 그 委囑者에게 業務委囑의 交涉 또는 그의 要請에 應하지 아니한다

第8條 建築士는 이미 다른 建築士에게 委囑된 일의 實施 또는 完成의 付託을 委囑者로부터 받았을 경우 當該 建築士와 委囑者 사이의 關係가 解消된 確認이 없이는 그 委囑을 引受아니한다

第9條 懸賞設計에 依한 實施設計에 있어 最高의 賞을 받은 以外의 建築士는 그 委囑을 拒否한다

第10條 다른 建築士 또는 建築技術者를 雇庸하고 있는 建築士는 自己에게 委囑된 일에 對한 責任에 支障이 없는 範圍內에서 被雇庸者의 技術向上을 可能케 하는 便宜를 提供한다

第11條 建築士는 建築材料 또는 建築榮造等의 廣告에 있어서 建築士의 各譽를 毀損시킬 證明書를 發付하지 아니한다

第12條 建築士는 自己의 事業 및 業績 또는 다른 建築士에 關하여 虛偽宣傳을 하지 아니한다

第13條 本倫理規約을 實施하기 爲하여 倫理委員會를 組織한다

第12條 建築士는 倫理委員會의 決定에 服從한다

倫理委員會規程

1965年9月25日 創立總會制定

目 的

本規程은 大韓建築士協會 倫理規約에 비추어 建築士의 威信과 權益을 保全하고 業務遂行에 있어서 建築士의 誠實性과 信義를 높이고 아울러 建築士의 不美한 行動과 犯法行爲를 未然에 防止하며 만일의 경우에는 公平正大히 自家肅正을 斷行함으로써 國家社會로부터 建築士의 權威와 信任을 維持함을 그 目的으로 한다

第1章 組 織

第1條 (1)本倫理委員會(以下 本委員會라함)에는 7各의 委員을 둔다

第2條 (1)委員은 理事會에서 選任한다

第3條 (1)本委員會에는 委員長 1各을 두되 委員中에서 互選한다

第4條 (1)倫理委員會의 決定은 在籍委員3分之2의 贊成으로 議決된다

第5條 (1)委員이 本委員會 審議對象의 事件에 關聯되었을 때에는 그 委員은 當該事件審議에 參與할 수 없다

第6條 (1)本委員會委員으로서 徵戒處分을 받았을 때에는 그 徵戒의 輕重을 莫論하고 委員資格을 喪失한다

第7條 (1)前條에 따라 委員中 缺員이 생길 경우에는 委員長의 提議에 따라 理事會가 이를 補選한다

第8章 審議의 發議 및 決議

第8條 (1)審議의 發議는 다음 경우에 發生한다

7. 委員의 發議가 있을 때

ㄴ. 正會員 7各 以上의 連署 要請이 있을 때

ㄷ. 理事會의 要求가 있을 때

ㄹ. 支部幹事會의 議決을 거쳐 支部長의 請求가 있을 때

ㅁ. 關係官廳의 通告가 있을 때

第9條 ①委員長은 審議의 發議를 받았을 때는 5日 以內에 委員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第10條 ①委員長은 審議對象이된 建築士를 委員會에 參府시켜 그 意見을 들어야한다

②正當한 理由없이 不參할 때는 그 意見을 듣지 않을 수 있다

第11條 ①徵戒에 對한 決議는 다음 名項의 行爲에 適用하되 그 決定은 勸告, 譴責, 資格停止 및 除各의 4種으로 한다

7. 勸告 또는 譴責에 該當하는 行爲

1. 委囑者에 對한 不誠實한 行爲

2. 報酬額의 不當한 割引

3. 다른 建築士에 對한 誹謗行爲

4. 建築士間의 不美한 行爲 및 다른 技術者와의 不當한 論爭行爲

5. 規約第 4, 5, 11, 12의 名條에 該當하는 行爲

ㄴ. 期限付 資格停止處分에 該當하는 行爲

1. 個人의 利益을 爲하여 다른 建築士의 權益을 유린하였다고 認定되는 行爲

2. 規約第 7, 8條에 該當하는 行爲

3. 특히 비열한 方法에 依한 다른 建築士와의 競爭行爲

4. 3回以上의 譴責을 받았을 경우

4. 建築士法令에 保하여 建築士資格 또는 事務所開設의 期限付 停止處分을 받았을 때

6. 正會員 會費를 1年以上 滯納하였을 때

ㄷ. 除各處分에 該當하는 行爲

1. 建築士로서 自己나 다른 建築士의 權益이나 各譽를 極히 損傷시켰다고 認定되는 行爲
2. 社會的으로 物의를 일으키고 또 그 制裁를 받았을 경우
3. 5回以上 譴責을 받았을 경우
4. 3回以上 資格停止處分을 받았을 경우
5. 建築士法令에 依하여 建築士의 免許取消 또는 事務所開設取消을 받았을 때
6. 3年以上 正會員 會費를 滯納하였을 때

第12條 ①委員會에서 決議를 하였을 때에는 5日以內에 委員長은 會長에게 그 決議事項을 報告하여야 한다

第13條 ①會長은 前條의 報告를 받았을 때 5日以內에 理事會를 召集하여 倫理委會 決議事項에 對한 受諾與否를 議決한다

②理事會는 倫理委員長을 參席시켜 意見의 疎述을 받아야 한다

第14條 ①理事會는 倫理委員會의 決定事項의 受諾與否를 決定하며 決定事項의 內容變更은 할 수 없다

②理事會가 受諾拒否할 때는 即刻 委員會에 再審을 要求하여야 한다

第15條 ①徵戒決定을 받은 建築士는 徵戒通告를 받은 후 5日以內에 直接 理事會에 對하여 1回에 限한 再審請求를 할 수 있다

第16條 徵戒는 理事會에서 議決된 後委員長 各義로 宣告함으로써 發効한다

附 則

第17條 本規程은 總會의 承認을 받은 날부터 發効한다

建築士協會 事業計劃

I, 總務關係事業

- (1) 設計料率에 對한 關係官廳 涉外
建築士業務의 健全한 發展과 建設族策에 附合하는 建築設計와 그 質的 向上을 圖謀하고자 現行 建築設計業務에 對한 報酬比率을 合理化하고 再調整하여 關係官廳의 承認을 얻는다.
- (2) 設計業務 稅率에 對한 關係官廳 涉外
建築士協會는 設計業務의 健實化와 設計事業의 發展向上을 圖謀하고 稅率의 適正化한 安全收納을 期하여 關係要路에 建議한다.
- (3) 共濟事業

各會員의 厚生 安位向上을 圖謀하고 資金의 融通, 資材物의 供給等의 共濟事業을 한다.

(4) 理事會 開會

理事會는 月一回 召集하여 會務事業에 對한 月別計劃, 推進, 執行等의 諸般 業務를 遂行한다.

(5) 總 會

總會는 年一回 定期總會에서 任員, 定款 其他를 議決하고 年一回 臨時總會를 召集하여 緊急, 臨時 處理할 問題 또는 中間 報告決議事項을 家議한다.

(6) 倫理委員會

會員間의 不美點, 品位損傷等에 對한 紛爭 不和等을 除去하고 圓滿한 解決을 얻고져 2개월에 1回 召集한다.

(7) 支部長會

서울支部長을 비롯하여 各支部長會를 月1回 召集하여 支部 全般에 對한 報告와 아울러 本協會에 建議事項을 提出한다.

II. 指導關係事業

(1) 會員指導研究 및 講習會

新會員 또는 特別設計事項에 對한 指導研究와 設計業務 또는 教養講習會를 年1回 開會한다.

7. 許可書式 例規

建築計 內容 및 許可手續에 對한 範例를 收錄한다.

ㄴ. 圖書作成要領

設計圖書作成의 基準을 例示하고 標準化하여 그 要領을 例示한다.

ㄷ. 會員의 倫理指導

會員間의 不安, 紛糾에 對하여 事前勸告 또는 妥協案을 提示하여 過誤와 反目을 除去한다.

ㄹ. 法 解 說

建築關係法の 適正한 解釋과 適用運營을 期하고 新法 難法의 解釋을 研究한다.

(2) 指導委員會 年6回

會員指導를 擔當하는 委員을 委囑하여 圖書內容 建築關係法の 適用 關係官廳에 對한 折衝, 諮問, 建議等의 會員指導를 한다.

III, 出版關係事

(1) 機關誌 刊行 年6回

建築士業務, 建築材料, 建設資材, 建築學術 및 會員 動態等を 收錄하여 隔月로 刊行한다.

(2) 共通示方書

建築工事に 關한 建築士協會 共通示方書를 制定

하여 出版한다.

(3) 設計料率 및 稅率規程表

設計報酬料率에 對한 表와 建築關係稅率 및 各種 規程을 收錄한다.

(4) 會員名簿

會員名簿, 定款, 規程, 任員名單을 年1回 印刷 하여 配布한다.

(5) 編纂委員會

機關誌 其他 出版에 對한 編纂委員會를 月1回 召集하여 決定한다.

IV. 事業部關係事業

(1) 設計料率研究

各國 設計料率, 現行 國內設計料率 및 設率業務 內容을 分析 研究 하여 合理的 料率의 根據를 提示한다.

(2) 稅率對策研究

設計業務의 實費, 事務所經費 業務獲得等의 條件과 現行稅率의 比較 檢討하여 合理的 稅率의 根據를 提示한다.

(3) 契約書式制定研究

設計 및 監督, 契約文書內容의 分析研究를 한다.

(4) 法解說研究

建築關係法의 難點解釋, 未備點의 是正 運營의 適正을 研究한다.

(5) 各研究委員會 (3~4 個 委員會)

上記 各研究部門에 對하여 適當한 人士로서 委員會를 構成하여 檢討케 한다.

① 設計料率研究委員會

② 稅率對策研究委員會

③ 契約書式制定委員會

④ 法解說 및 是正案研究委員會

⑤ 構造研究委員會

⑥ 資材研究委員會

(建)(築)(落)(穗)

제 물 人 造 石(non slip)

建物에서 階段은 計劃上으로나 機能上으로 重要한 것임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단 構造에서 一般의으로 가장 많이 失敗 하는것이 non slip임을 알수 있습니다.

non slip은 現在 여러가지 種類가 나와 있으나 거의가 階段自體에 充分히 接着 되지 않아 永久의이 못되며 特히 鐵物은 磨耗性이 甚하고 振動關係로 쉽게 떨어지는 例가 많습니다.

階段中 non slip이라면 主로 階段을 利用하는 사람들이 non slip을 밟고 올라 가기 때문에 어느面으로나 Hand rail과 마찬가지로 重要性이 있으나 構造의으로는 대단히 失敗率이 많다고 볼수 있을것입니다.

特히 本 non slip은 學校, 事務所 建物の 바닥을 人造石으로 Finishing 할때 施工과 經濟, 機能各方面에서 有利點을 볼수 있습니다.

施工方法은 먼저 階段 conc를 치고 人造石 練出을 할때 non slip 部分만 남겨 두었다가 다음에 圖示와 같은 形의 non slip을 人造石으로 製造 하는 것임

니다.

1. Cement製品이기 때문에 階段 어느 部分의 構造나 같이 強하게 조절 할수 있고 壓強에 強한 人造石이기 때문에 磨耗에 대단히 強합니다.

2. 人造石으로 製造하기 때문에 色彩나 모양을 自由로 할수 있습니다.

3. 施工이 간단합니다.

4. 階段構造體나 同一材料이기 때문에 接着이 잘됨.

5. 部分的으로 破損이 있어도 修理에 簡單합니다.

6. non slip으로의 機能이 대단히 좋음.

7. 他 材料보다 대단히 經濟의임.

上記와 같은 利點은 역시 數十年의 學校 事務所 建物에 實施한 結果 대단히 價秀함을 알고 우리 建築界에 조그마한 貢獻이 될까해서 經驗을 披擲 하는 바입니다.

<金 敬 煥>